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27

발의연월일: 2021. 4. 26.

발 의 자:김용판·정희용·송언석

구자근 • 이주환 • 서일준

배준영 · 김예지 · 박덕흠

하영제 · 김성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,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,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모두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지속된 대학 등록금 동결,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육비증가, 법률 강화에 의한 관리운영비 증가, 최저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대학의 재정난이 가속되고 있는 만큼,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학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, 학교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,학교등이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대학의 지속적인발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41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"2021년"을 각각 "2024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	제41조(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
대한 면제) ① 「초・중등교육	대한 면제) ①
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	
학교,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	
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	
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또	
는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에	
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	
자(이하 이 조에서 "학교등"이	
라 한다)가 해당 사업에 직접	
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	
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	
는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취득	
세를 <u>2021년</u> 12월 31일까지 면	<u>2024년</u>
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	
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	
득세를 추징한다.	<u>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	②
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	
동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	
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에	
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	

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 「지방세법」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. 다만,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면제하지 아니한다.

-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다만,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.
- ④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 제14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 다.

<u>2024년</u>
③
<u>202</u>
<u>202</u> <u>4년</u>
<u>4년</u>
<u>4년</u>
<u>4년</u>
<u>4년</u>

- ⑤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 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 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 기,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 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를, 그 학교 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.
-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(「지방세법」제112조에 따른부과액을 포함한다)및「지방세법」제146조제2항에 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
⑤
<u>2024년</u>
6
<u>2024년</u>